

편집위원회 규정

제 1 조 명칭

본 위원회는 대한소아응급의학회(이하 학회) 편집위원회(이하 위원회)라 칭한다.

제 2 조 소재지

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서울에 본부를 두며 필요에 따라 광역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 3 조 목적

위원회는 학회의 공식 학술지인, 대한소아응급의학회지(이하 학회지)의 발행을 주업무로 한다.

제 4 조 구성 및 임기

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- 1) 위원장: 편집위원회를 대표한다. 학회 회장(이하 회장)이 임명하고,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에 관한 제한은 없다.
- 2) 간행이사: 학회 이사회의 일원으로서, 주요 업무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하며, 이사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위원회에 전달한다. 업무 범위는 학회 회칙에 준한다. 회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에 관한 제한은 없다.
- 3) 간사: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주관한다. 위원 중 위원장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에 관한 제한은 없다.
- 4) 위원: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수행한다. 위원장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에 관한 제한은 없다.
- 5) 일반사무: 위원회의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.
- 6) 심사위원: 효율적인 논문 심사를 위하여, 회장이 분야별 심사위원을 위촉한다. 임기에 관한 제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. 위원장은 논문에 따라 특별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- 7) 보선 위원장, 이사,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원고편집인 및 영문교정자를 위촉할 수 있다..

제 5 조 업무

위원회는 학회지의 효율적인 편집 및 출판을 위하여 아래의 업무를 시행한다.

- 1) 학회지 접수 논문의 심사.
- 2) 학회지 편집.

- 3) 학회지 발행.
- 4) 국내외 논문데이터베이스에 학회지 논문 수록.
- 5) 효율적인 편집을 위한 편집회의(이하 회의) 개최(연 4회).
- 6) 학회지 발전을 위한 출판정책회의(워크숍) 개최(연 1회).
- 7) 연구·출판윤리 교육 및 접수 논문의 윤리성 검토
- 8) 심사위원 선정
- 9) 기타 학회 이사회(이하 이사회) 위촉사항 및 필요한 사항
- 10) 연간계획 수립

제 6 조 회의

위원회는 효율적인 편집 및 출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의를 운영한다.

- 1) 회의를 연 4회 개최하며,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2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.
- 3) 회의록은 회의주관자의 서명날인 후 학회 본부에 비치하여야 한다.
- 4) 위원회에서 논의 및 결정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 후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제 7 조 부칙

- 1)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.
- 2) 본 규정은 2017년 1월부터 시행한다.
- 3) 본 규정은 2017년 7월 27일 최종 개정되었다.